#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# (문기호 의원 대표발의)

| 의 안 번 호 | 2520 |
|---|---|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4.
발 의 자 : 문기호, 정재환, 홍영진
문희성, 강혜순

## 1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인 관리의 효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령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
나. 공인 관리관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
## 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## 4. 관계법령: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제40조

## 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5. 11. 27. ~ 12. 3.(6일간) / 의견없음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"를 "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40조"로 한다.

제11조 중 "의사계장"을 "의정계장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(公印)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| 제1조(목적) -------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 제40조----------. |
| 제11조(관리) 공인은 의사계장이 관리하며, 그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. | 제11조(관리) ----- 의정계장----------. |

# 관 계 법 령

□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

**제40조(공인)**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(公印)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○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 2. 미첨부 사유

○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에 해당함.

## 3. 작성자

○ 소　속: 의회사무국
○ 직　급: 지방행정주사
○ 성　명: 박미숙
○ 연락처: (052)290-4221